

# 2020년도 제10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6. 15.(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권헌영, 박정인,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9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898건(안건번호 제2020-44248호~4648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44248호~44250호는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원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46476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고전 영화를 전송한 사안임. 해당 영상저작물이 공표된 지 53년이 도과한 점, 해당 영화의 합법 유통 경로를 찾을 수 없고, 고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용자 편익도 존재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46481호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한 사안임.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 및 구매 희망자들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89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0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0-9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전에 대한 회의록 공개 여부 및 제2호 안전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6쪽의 OSP명, 7쪽의 밴드명, 15쪽의 사이트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2호 안전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이므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C 위원, D 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부분은 전부 공개함.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OSP명, 밴드명, 사이트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전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학산문화사', 'tvN', '넷플릭스', '미국 HBO', '미국 ABC', '영국 BBC', '유니버설픽처스', '월트디즈니컴퍼니', '소니픽처스', '20세기폭스'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B 위원, C 위원, D 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89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 2020-44248호~46481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4248

호~44250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웹하드에서 가수 '☆☆☆☆'이 실연한 곡 '★★★★'와 가수 '○○○○'가 '●●●●'의 '◎◎'와 함께 실연한 곡 '◇◇'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다수의 음원파일을 압축파일 형태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44248호~4425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기존 심의위원회가 특별한 이견 없이 가결 처리한 안전과 같음. 가결 의견임.
- C 위원: 가결 의견임.
- A 위원: 가결함.
- D 위원: 가결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4248호~4425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647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 요청한 건

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1967년 공표된 영화 '◆◆◆◆◆'을 1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본 건 복제·전송자가 상습적으로 불법복제  
물을 업로드하는 헤비업로더는 아닌 것으로 보임.

(영화 데이터베이스 검색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당 영화는 약 53년  
전인 1967. 4. 24. 공표됨.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개봉하였고, 1990.  
8. 25. 재개봉하였음. 영화의 국내 배타적발행권자 또는 exclusive  
licensee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음. 또한 해당 영화를 온라인에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지 못했음. 2004년 DVD로  
발매되었으나 지금은 판매하고 있지 않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해당 영화 DVD를 판매하는 게시물은 검색되지 않음. 위원님들께서  
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  
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  
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4647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가결 의견임. 시정권고 제도의 주된 목적은 온라인 공간에  
있는 저작물의 불법적인 상태를 제거하는 것임. 이에 심의대상 게시  
물을 제거하는 것이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맞음.
- A 위원: 가결 의견임. 본 건 복제·전송자는 헤비업로더도 아니고,  
'□□□□'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른 콘텐츠들은 대부분 제휴 저작물  
이라는 점에서 해당 게시자가 불법복제물 공유나 영리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업로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  
은 제휴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

함.

- D 위원: 심의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다음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내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음.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 여부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 정현순 사무처장: 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 D 위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는 사안은 시정권고의 필요성 내지 타당성이 인정되는지?
- B 위원: 시정권고 의결에 있어 법률적 근거만 따지는 것은 아님. 위원님의 판단이 중요함.
- D 위원: 시정권고의 중요한 판단 요건이 있는데, 요건 중 한 가지가 결여돼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듦. 해당 안건의 경우 합법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부결 의견임.
- B 위원: 부결 의견에 동의함. 이러한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어 보임. 해당 영상저작물이 공표된 지 50년이 도과하였고, 웹하드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방법 외에 해당 영화를 이용할 방법이 달리 없으며,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복제·전송하고 있더라도 이를 통해 복제·전송자가 얻게 되는 영리적인 이익보다는 이용자가



고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면에서 이용자 편익이 존재함. 민원인이 신고한 것도 아니고 보호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안이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조치가 될 수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심의위원회 회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2인의 위원이 시정조치 권고를 찬성하고, 2인의 위원은 반대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안전번호 제2020-4647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6481호는 보호원이 불법 스트리밍 장치인 '■■■■■'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네이버 쇼핑 입점 판매자가 '■■■■■'라는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 URL에 직접 접속하면서)'■■■■■' 기기에 전용 앱을 설치하면 뉴스, 드라마 등 TV 방송을 실시간으로 무단 이용할 수 있고, VOD 서비스를 통해 영화 등 영상저작물을 무단 이용할 수 있음.

(기술 보고서를 제시하면서)본 건 기기의 자세한 작동원리와 기능은 본원의 현장대응국 디지털포렌식센터 담당자가 설명하겠음.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담당자 설명을 바탕으로 해당 안전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디지털포렌식센터 △△△△△: ('■■■■■'를 직접 구동하면서)'■■■

■■■'에 인터넷 선만 연결하면 무료로 실시간 TV와 VOD를 이용할 수 있음. 한국 채널뿐만 아니라 외국 채널까지 이용 가능함. 재생이 끊기거나 화질이 좋지 않은 문제가 종종 발생함. 이는 인터넷 연결의 문제이고 셋톱박스 기기 자체의 문제는 아님.

- C 위원: 다른 나라의 채널에 접속해 보여주기 바람.
- 디지털포렌식센터 △△△△△: (중국의 'CCTV', 영국의 'BBC' 등 외국 채널에 접속하면서)우리나라와 거리가 먼 나라의 채널일수록 접속 속도가 느려짐. 중국이나 일본의 채널은 접속이 잘 되는 반면 영국이나 미국의 채널은 몇 분에 걸치는 로딩 시간을 기다려야 함.
- D 위원: 미국의 경우 97개의 채널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구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셋톱박스 다운 방식인지 아니면 송출 방식인지?
- 디지털포렌식센터 △△△△△: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이나에 따라 연결방식에 차이가 있음. 지상파의 경우 따로 위성 방송을 받아서 송출하고, 케이블 방송의 경우 셋톱박스에서 다운받아서 송출함.
- D 위원: 방송 신호를 중간에 해킹해서 연결하는 방식일 것임.
- C 위원: 중국 도처에 있는 조직이 받은 신호를 센터에서 정리하여 인터넷망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판단됨.

- A 위원: 해외 채널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버퍼링이 많이 걸려 우리나라 채널을 시청하는데만 용이해 보임.
- 정현순 사무처장: 해당 기기의 주요 고객층은 해외 교민들이라고 함.
- A 위원: VOD 메뉴에 접속하여 보여주기 바람.
- 디지털포렌식센터 △△△△△: ‘꼰대인턴’ 등 우리나라 최신 드라마가 업로드되어 있음.
- 정현순 사무처장: VOD 재생을 하면 중국 광고를 시청해야 하는데, 이것으로 보아 서버 운영자가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디지털포렌식센터 △△△△△: VOD 목록에 해외 최신 방송 프로그램도 있음. 이상으로 ‘■■■■■’의 구동을 마치겠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본 건 기기에 관한 기술 보고서, 디지털포렌식센터 직원의 제품 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20-4648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미국의 ‘슬림박스’와 유사한 기기인지?
- 정현순 사무처장: ‘TV PAD’와 유사한 기기임.

- C 위원: '소리바다', '토렌트' 등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될 수는 있지만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임. 이와 같은 논리로 본 건 기기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저작권 침해 정보'라는 용어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라기보다 불법을 조장하는 정보라고 생각함. '■■■■'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이용자가 침해행위를 하는 것임.
- B 위원: 본 건 기기 내지 기술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심의대상 게시물 즉, 본 건 기기를 판매하는 글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심의위원회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과 같이 게시물 내에 불법복제물 자체는 없더라도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준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 C 위원: 본 건 기기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구매자의 존재를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지상파 방송만 시청하는 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안테나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본 건 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관하여 우리 심의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의문임. 불법성에 직접적으로 연결 짓거나, 혹은 그 연결성에 어느 정도의 합리적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시정권고의 판단 기준을 정립해야 함.
- 성원영 전문위원: 하지만 본 건의 경우 VOD 서비스와 실시간 TV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 건 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음.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방조범이 있으면 정범이 있을 텐데 해당 안건의 경우 수입사 또는 제조사도 정범이 될 수 있고 구매자도 정범이 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본 건 기기 제작사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및 본 건 기기 구매자들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저작권 등 침해 방조에 해당함.

- C 위원: 기기 안에 불법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의미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런 의미는 아님. VOD 서비스의 경우 불법복제물 정보는 판매자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음. 그래서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과 같이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임. 즉 기기 자체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며 기기 내부 메모리에는 불법복제물이 전혀 없음. 본 건 기기와 판매자가 제공하는 어플이 보완재로서 결합을 해서 저작재산권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방송물들을 시청할 수 있는 것임. 본 건 기기가 합법적으로 이용될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음.
- C 위원: 본 건 기기는 '토렌트'와 어떻게 다른지?
- 정현순 사무처장: 'Napster', '소리바다', 토렌트' 등 P2P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취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합법적 이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있다는 것이었음. 본 건 기기가 '토렌트'와 다른 점은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서버를 두고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제품이 출시되었다는 것임. 우리나라나 미국 콘텐츠인데도 중국 광고가 삽입되어 있는 것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미국의 법리를 따르더라도 유인책임이나 기여침해 법리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 또한 우리나라 법원은 본 건 셋톱박스 기기와 유사한 'TV PAD'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임을 인정한 바 있음. 이에 대한 판례번호는 각주 10번과 1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D 위원: 복제권 침해의 정범은 누구인지?
- 정현순 사무처장: 불법복제물이 서버에 저장돼야 하므로 서버 운영자가 정범이 됨. 한편 본 건 기기는 VOD 서비스와 실시간 TV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VOD 서비스는 전송권 침해, 실시간 TV 서비스는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에 해당함.
- C 위원: 디지털포렌식센터는 판매자 서버에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마땅함. 저작권 등 침해 방조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 B 위원: 저는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함. 실시간 TV 방송이나 VOD 서비스가 무단 복제되는 것을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C 위원: 기술 자체를 곧바로 불법성으로 연결할 수 없음.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상정한 것임.

- B 위원: VOD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합법일 수 없음. 자체가 불법임.
- C 위원: 셋톱박스 기기 자체가 VOD 서비스 등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 기기 구매자 모두가 불법복제물을 이용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됨. 예컨대 공중파 실시간 TV 방송만을 이용하기 위해 셋톱박스를 구입한 사람도 있을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실시간 TV 방송을 무단 제공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동시방송중계권 침해임.
- 정현순 사무처장: 이용자 입장에서 접근하면 충분히 타당한 의견임. 하지만 중국에 있는 서버에서 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상파 방송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는 동시방송중계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임.
- C 위원: 기술의 중립성을 고려해야 함. 불법행위임을 가정하여 접근해선 안 되고, 합법인 상황을 가정한 뒤 그러한 상태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D 위원: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지상파 TV 방송을 무단 복제하여 한국으로 재전송하는 것 자체가 합법이 아님. 방송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법적으로 수신하는 것임. 이용자 입장으로 접근하더라도 합법이 아님. 이용목적이 순수하더라도 구매자가 지상파 TV 방송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 이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음. 따라서 본 건 기기 제작자 또는 구매

자의 저작권 등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있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됨.

- C 위원: 그렇다면 시정 조치를 권고하자는 의견에 동의함.  
다만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데 이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
- D 위원: 해당 안건에서 저작권 침해의 정범은 서버 운영자임. 그리고 제조사, 판매자, 이용자는 방조범이 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시정권고를 가결해야 함.
- A 위원: 본 건 기기의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려야 마땅함.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제조사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 B 위원: 보호원의 권한은 아님.
- D 위원: 방송사업자에게 심의대상 게시물의 존재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이미 알고 있음. 해당 안건은 방송사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안임.
- 정현순 사무처장: 추측건대 방송사는 이미 본 건 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본 건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는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한 삭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주된 쟁점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임. 심의위원회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보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지난 전체위원회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
- A 위원: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조치는 시정권고 제도가 유일함. 다른 조치가 가능하다면 엄격하게 심사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시정권고 제도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유일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해야 마땅함.
- D 위원: 심의위원회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과 같이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준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링크 설정 게시물처럼 직접적으로 불법복제물에 연결되고 있지는 않지만 판매자는 본 건 기기의 사용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판매자는 전 세계 실시간 방송을 시청할 수 있거나, 최신 VOD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본 건 기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즉 판매자는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침해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본 건 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야

함.

- B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를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불법복제물등"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정보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논의의 핵심임. 기존 심의위원회의 입장은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고, 제도의 취지상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음.

금일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판매자는 본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에 시정권고를 가결함.

- C 위원: 판매자가 '저작권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판매한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D 위원: 그렇다고 해서 판매자의 책임이 지워지는 것은 아님. 그리고 판매자는 저작권 침해 행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법 스트리밍 셋톱박스를 판매하고 있음.
- C 위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 및 구매자들에게 저작권법 준수

를 안내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결 의견에는 동의함. 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 정보'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음.

- 정현순 사무처장: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음. 심의대상 게시물 판매자는 구매자의 침해행위를 유인, 야기하고 있음. 미국법상 기여침해, 유인책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충분히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D 위원: 동의함. 다만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처럼 심의대상 게시물도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링크 설정 외에 추가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B 위원: 판매자가 기기의 제작자, 구매자의 침해 행위를 알고 있거나 혹은 알 수 있었다면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함.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 복제물등"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앞으로 확립된 심의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D 위원: 판매자가 미필적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인지?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기재된 정보의 내용으로부터 판매자가 침해 행위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판매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됨.

- C 위원: 링크를 저작권 침해 정보로 인정하는데 엄청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저작권 침해 정보로 인정하려면 이와 같은 논의 단계가 필요함.
- B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는 법률적 논의와 함께 자율적 조치의 일종인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시정권고 제도는 강제력 있는 제도가 아님. 따라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침해 행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권고가 아니라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었다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했을 것임.
- D 위원: 전문위원은 시정권고 제도를 자발적 시정 기회를 주는 행정지도라고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처분과 비슷한 성격의 조치로 파악하고 있음. 방심위의 처분은 강제처분이므로 법률적 효력이 있는데 다소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듦. 시정권고 제도를 처분의 일종으로 본다면 링크 이외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한 나름의 기준을 정립해야 함.
- B 위원: 분과 당 많게는 몇 천 개의 안전을 심의하고 있음. 모든 안전에 유형별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음.
- D 위원: 안전이 많으니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짐. 링크 설정 외에 추가 심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해당 안전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요청함.

- 정현순 사무처장: 금번 심의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가결할 경우 본원 담당 부서에서 해당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임. 그렇다면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안전에 대한 심의가 각 분과 별로 진행될 것임. 1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타 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 상정으로 결론이 난다면 전체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시정권고를 가결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가결 의견이나, 추가 기준 설정을 위해 전체회의 상정의견 드림.
- B 위원: 가결 의견임.
- A 위원: 가결함이 타당함.
- C 위원: 기기 판매글에 대해서 시정권고 하는 것에 동의함.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0-4648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

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4251호~46475호, 제2020-46477호~46480호는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 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3,893건 게시물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음.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건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그중 일부 안건을 설명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4251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가수 '전미도'가 실연한 곡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를 판매한 사안이고, 제2020-44275호는 가수 '조정석'이 실연한 곡 '아로하'를 판매한 사안이며, 제2020-44280호는 가수 '조이'가 실연한 곡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를 판매한 사안임. 모두 방송사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로 발매되어 주요 음원차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곡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428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가수 '태연'이 실연한 곡 'Happy'를 판매한 사안임. 해당 음원은 2020. 5. 4. 발매됨. 안건번호 제2020-44284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가수 '둘째이모 김다비'가 실연한 곡 '주라주라'를 판매한 사안임. 해당 음원은 2020. 5. 1. 발매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4819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일본 TV 만화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T'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만화는 2020. 1. 10.부터 일본 AT-X 채널에서 방영 중이고, 2020. 1. 11.부터 우리나라 애니플러스 채널에서 방영 중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4845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일본 TV만화 '사랑하는 소행성'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만화는 2020. 1. 3.부터 2020. 3. 27.까지 일본 AT-X 채널

에서 방영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4910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일본 TV만화 ‘보석상 리처드 씨의 수수께끼 감정’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만화는 2020. 1. 9.부터 2020. 3. 26.까지 일본 AT-X 채널에서 방영하였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4923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드라마는 tvN 채널에서 2020. 3. 12.부터 2020. 5. 28.까지 방영하였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4964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화양연화 - 삶이 꽃이 되는 순간’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드라마는 tvN에서 2020. 4. 25. 방영 시작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5004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 ‘오 마이 베이비’를 판매한 사안임.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2020. 5. 13.부터 tvN 채널에서 방영 시작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5038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중국 드라마 ‘애정적개관’을 판매한 사안임. ‘애정적개관’은 2020. 3. 30.부터 중국 후난위성TV 채널에서 방영 시작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5110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미국 드라마 ‘위쳐’를 판매한 사안임. 해당 드라마는 2019. 12. 20.부터 현재까지 넷플릭스에서 제공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5171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 ‘아내의 맛’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프로그램은 2018. 6. 5.부터 TV조선 채널에서 방영 시작하여 현재까지 방영 중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5359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 ‘모란봉클럽’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프로그램은 2015. 9. 12.부터 TV조선 채널에서 방영 중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5706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사냥의 시간’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장 개봉이 취소된 후 2020. 4. 23.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하였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5719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을 판매한 사안임. 미국에서 2020. 3. 6. 개봉하였고, 국내에서는 2020. 6. 17. 개봉 예정인 애니메이션 영화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5726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트롤: 월드 투어’를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29. 극장과 VOD 동시 개봉했고, 네이버 시리즈 등에서 22,000원에 대여 가능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5753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언더워터’를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5. 27. 개봉하여 현재까지 상영 중임. 2020. 6. 2. 기준 예매율 2위이며, 누적 관객수 70,338명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5870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콜 오브 와일드’를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5. 14. 개봉하여 현재까지 상영 중임. 2020. 6. 8. 기준 누적 관객수 35,692명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44251호~46475호, 제2020-46477호~4648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B 위원, C 위원, D 위원: 안전번호 제2020-44251호~46475호, 제2020-46477호~46480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4251호~46475호, 제2020-46477호~4648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4647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44248호~46475호, 제2020-46477호~4648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10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0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6. 22.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권현영

위원 박정인

위원 이성엽